



금융감독원

보도참고

금융은 투자를 하게 소비자는 해복하게

보도

2023.5.17.(수) 조간

배포

2023.5.16.(화)

담당부서	여신금융검사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팀장	임연하	(02-3145-8800)
		담당자	검사역	박은진	(02-3145-8821)

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,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세요!

■ 소비자경보 2023 - 13호					
등급	주의	경고	위험		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		

소비자경보 내용

- ◆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카드 도난 분실,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특히,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
- ⇒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시 다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행동하세요!

※ 소비자 행동요령

①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!

- 카드 사용국가, 1일 사용금액,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여 해외 부정 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②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!

- 출국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어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③ 카드 뒷면 서명 필수!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노출 금지!

-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또는 본인이 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일어난 부정사용 사고는 보상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④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!

- 결제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1

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□ '22년 중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1,522건, 64.2억 원으로 전년 대비(17,969건, 49.1억 원) 증가

-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증가*에 기인

* (부정거래 건수/금액) (건 억원) : '19(24,866/85.0), '20(20,217/62.5), '21(17,969/49.1), '22(21,522/64.2)

□ 특히,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, 사기수법도 다양화

* 건당 부정사용액 : 해외(1,289천원), 국내(241천원) [해외가 국내의 5.35배]

- 금년에는 대체공휴일·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하여 해외 여행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

* 내국인 출국자수, 카드 해외사용액(만명, 조원) : ('21년) 122, 6.21 → ('22년) 655, 8.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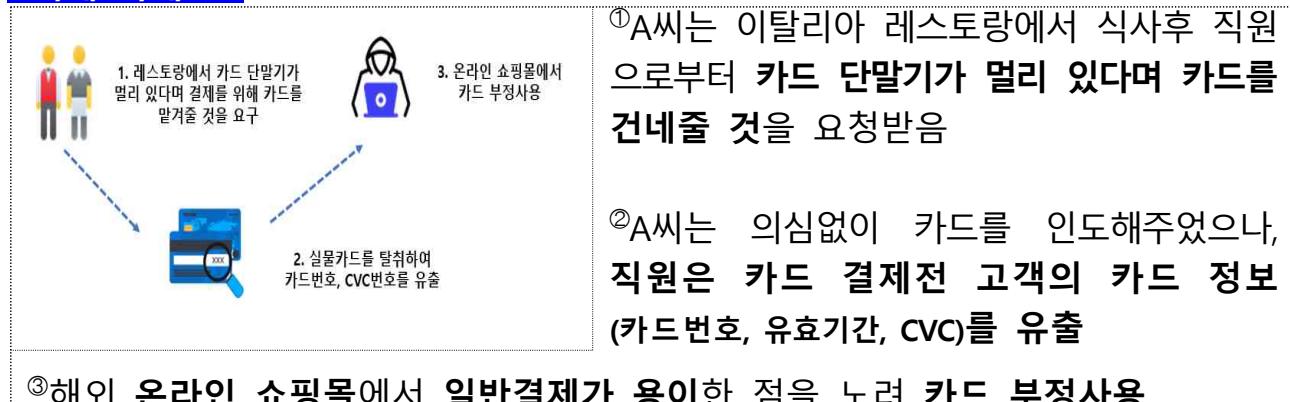
2

소비자 피해사례

① 카드 정보탈취에 따른 부정거래

- 해외 레스토랑, 기념품 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하여 온라인상 카드 부정사용 하는 사례

<피해 사례 1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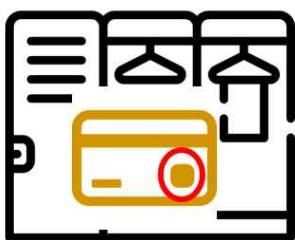


② 카드 도난에 의한 부정거래 사례

- 최근 범인들은 카드 회원 또는 카드사의 FDS 감시망^{*}을 피해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IC칩 탈취 등 교묘한 수법을 통해 카드 부정사용

* 해외에서 IC거래에 실패하여 MS 결제방식을 통해 고액의 카드결제사(풀백거래) FDS에 포착가능

<피해 사례 2>



- B씨는 동남아 여행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
- B씨가 마사지를 받는 중 범인은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던 B씨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 한 후 빈카드에 입혀 귀금속 속에서 거액 카드 부정사용하였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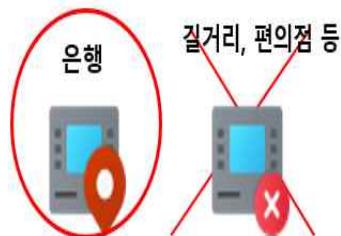
③ 카드 도난에 의한 부정거래 사례

- B씨는 본인의 카드에 IC칩이 단순 손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없이 다른 카드로 결제하다, 카드 결제일에서야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신고

③ 카드 복제에 의한 부정거래 사례

- 실물카드상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다양한 수법으로 복제기를 사용하여 카드를 위변조('스키밍 수법')

<피해사례 3>



- 프랑스에 간 C씨는 범인들이 편의점 등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놓은 것을 모른 채 ATM기를 의심없이 이용
- 범인은 C씨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후 이탈리아,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 부정 사용

③ C씨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본인의 복제된 카드가 프랑스 외에 각국에서 부정사용되어 피해 규모가 커진 상황

3 | 소비자 행동요령

①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!

- 해외사용안심설정·출입국정보활용동의를 통해 해외 부정거래 예방 가능

⇒ (행동요령) ① 「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」를 신청하여 카드 사용 국가, 1일 사용금액,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세요. 해외 각지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② 또한 「해외출입국정보활용」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여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②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!

- 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전체 부정사용의 대부분*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·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 방지 가능

* 全 부정사용 건수(21,522건)의 96.7%(20,812건) 차지('22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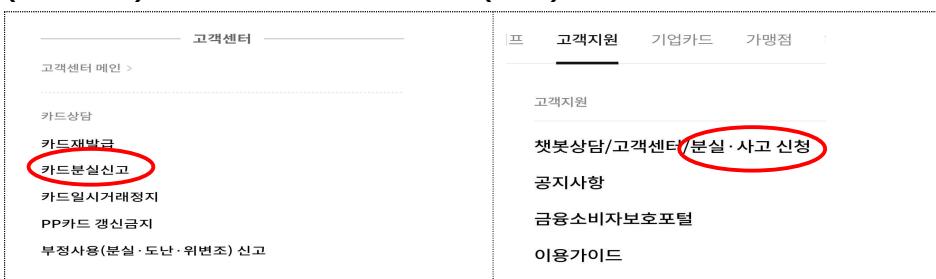
- 해외에서 카드회원이 카드 정지 신고절차가 용이치 않은 점을 노려 부정사용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소비자는 다음의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빠르게 대처할 필요

⇒ (행동요령) ①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고 카드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.

② 「결제알림 문자서비스」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(SMS)로 제공하여 부정사용 발생시 회원이 조기에 인지 대처 가능합니다.

[참고] 카드사 어플리케이션(App)을 통한 카드 분실 신고

- (신고방법) 카드사 앱의 「고객센터(지원)-카드분실신고」에 접속하여 간편 신고 가능



※ 어플리케이션은 로밍서비스 신청과 상관없이 와이파이(Wifi) 및 데이터로 연결 가능하여 해외에서도 사용이 보다 용이

③ 카드회원이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 보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!

-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며,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 중
 - 특히, 카드 뒷면 서명 등 카드 회원의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음

⇒ (행동요령) ①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시고, ②해외여행시 가족 명의 카드를 챙겨가는 경우를 삼가세요.

③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, ④카드회원의 뒤늦은 분실신고^{*}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.

* 여전법 §16② 및 동법 시행령 §6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분실·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

☞ 카드회원의 과실이 없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천액 보상합니다.

④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,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삼가하세요!

-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다음의 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

⇒ (행동요령) ①사기범의 조작이 가능한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하여야 합니다.

②소비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“눈앞”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